

급 물 살 타는 출판 저작권 보호

출판물 대여권,

내년부터 시행 확정

백원근 |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출판물의 무단대여를 금지시키는 법률이 드디어 일본에서 마련됐다. 도서와 잡지의 대여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일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출판물 대여권이 정식 발효된다. 1984년부터 도입된 음악 CD(당초는 레코드), 일본영화 비디오 등과 마찬가지로 대여권이 출판물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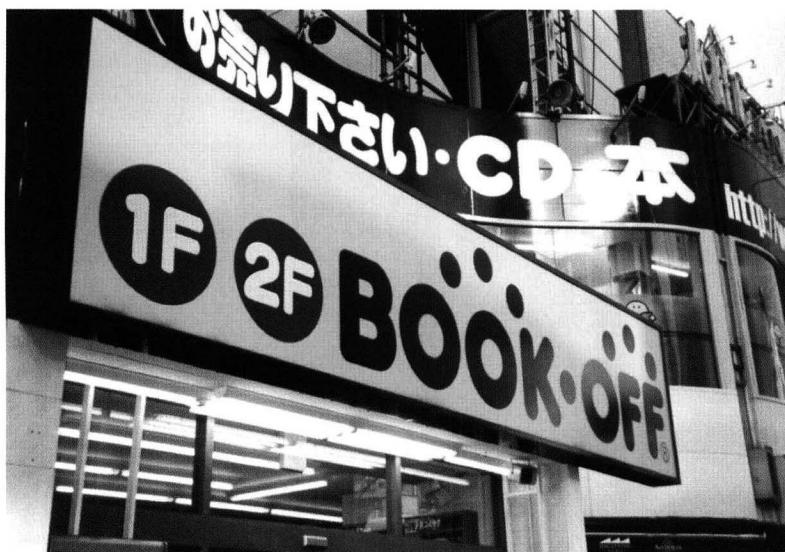
대여점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물의 대여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위반시 처벌수준을 높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 개정 내용의 골자이다.

관련 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본서적출판협회와 일본잡지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관련 단체의 노력이 거둔 성과로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이며, 향후 과제인 저작권법상 출판자의 권리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매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중심 단체인 대여권연락협의회(藤子不二雄 대표)

역시 “우리의 주장은 작가의 노력한 성과가 작가에게 제대로 환원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있으며,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수용된 것에 고무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법은 또 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염가의 일본음악 CD가 역수입되는 것을 봉쇄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CD가 수입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즉 현지의 물가 수준에 맞춰 작곡가의 라이선스 요금을 낮춘 염가상품을 역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음악산업과 저작권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당초 출판물 대여권이 상정된 배경에 대해 문화청 보고서는, 주로 비디오 대여점으로 운영되던 대여업체들이 복합점 형태로 도서(특히 만화)를 취급하며 급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작년 말 현재 약 250개 대형 점포가 운영되고 있었고, 비디오·음반·도서 등을 판매·대여하는 복합점이 전국에 4,000개 정도임을 감안할 때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이 높다. 잡지협회가 도쿄 인근의 치바현 소재 신간서점인 스바루서점에서 5개월 동안 실험점포를 운영한 결과, 월평균 3만 권이나 대여되었고 동일한 신간의 판매량은 전국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자료도 인용됐다. 이용자 양케이트 조사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대여 선호도가 구입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지만, 대여로 인



도쿄 시부야 중심가에 위치한 중고책 매입·판매업체 BOOK OFF



한 신간 매출 저하가 실제로 입증된 것이다.

법안 통과로 일본서적출판협회, '21세기 만화작가의 저작권을 생각하는 모임' 등 출판 및 저작권 15개 단체로 구성된 대여권연락협의회는 대여권 집중관리기구인 '출판물 대여권 관리센터'(가칭)를 7월 중 운영에 들어간다. 이 단체는 대여권 관리대행 사업자를 통해 일선 대여점과 대여업무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대여 허락요금을 징수하여 출판사를 경유해 저작자에게 대여권료를 분배할 방침이다. 비디오, CD 대여점업계 단체인 일본CD·비디오대여상업조합(CDVJ)을 교섭 창구로 삼아 대여점의 신간 대여 유예기간 설정(시차 공급), 대여 허락요금 등을 협의하는 등 대여권 사업의 기본계획 책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대여권의 도입을 둘러싼 일련의 법제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이 관련 업계 공동의 신속한 대응 노력이다. 기존 만화카페, 신형 중고서점의 범람에 이어 대규모 체인형 대여점이 등장하자 만화 매출의 침해를 우려해 '21세기 만화작가의 저작권을 생각하는 모임'이 발족됐고, 작년 6월에는 출판계 단체를 포함한 대여권연락협의회가 설립됐다. 업계의 요청으로 문화청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올해 1월 문화심의회 답신을 통해 출판물의 대여권 적용을 결정했다. '21세기 만화작가의 저작권을 생각하는 모임'은 2월 총회에서 신간 만화의 대여 금지 기간을 3개월로 하고, 대여 허락요금은 도서가격과 동일액(5퍼센트 부가세 제외)으로 한다는 등의 시안을 채택했다. 이어서 개정 저작권법은 3월 5일 정부의 개정안의결, 4월 21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로 법제화 수순을 밟아 왔다.

다음 차례는 출판자의 권리보호

만화가 단체나 만화를 발행하는 일부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출판물 대여권 제정에 대한 일본 출판계의 실제 관심은 높지 않다. 한국에서도 주로 만화가 단체를 중심으로 대여권을 주장하는 현실과 흡사하다.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뿐 아니라, 대여점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여료 수익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그다지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비해 출판계의 양대 단체가 대여권 도입 환영 성명서에서 밝혔듯, '출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점에 주목한다. 출판물의 기획, 편집, 생산에 기울인 출판인의 노력과 투자가 저작자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고유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1990년 일본 문화청의 저작권심의회 소위원회는 출판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경제단체의 반발로 법제화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 출판계는 1998년부터 집중적인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서적출판협회 저작출판권위원회의 보고서 <출판자의 권리에 대해>는 출판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권리의 종류는 저작인접권이고, 권리의 성격은 원칙적으로 허락권이며, 보호받는 출판자는 '출판물의 기획부터 발행에 이르는 활동을 전반적으로 발의하여 책임지고 행한 자' (발행인)이다. 그리고 보호내용은 출판물의 판면(版)을 이용한 복제, 전송, 양도, 대여이다. 권리 행사방식은 집중관리를 할 경우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보호기간은 여타의 저작인접권에 준해 50년간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일본 출판계는 향후 과제로 경제계 및 저작권계와의 인식 공유, 권리 부재에 따른 피해실태 조사,



전국에 1,150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일본 최대 문화 콘텐츠 복합점 CCC가 운영하는 츠타야(TSUTAYA) 롯폰기 지점.

저작권자와 출판자 간의 계약관계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청은 올해 1월 발표한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보고서>를 통해 “출판사가 저작물을 공중 전달하는 역할이 크고, 출판물의 복제에 관련된 출판사의 보수청구권에 대한 관계자간 협의가 진행중인바, 관계자간의 결론을 통해 2004년 이후 필요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밝혔다.

■ 공공대여권, 2008년 시행 전망

일본 정부의 치밀한 저작권 보호 움직임은 이에서 멈추지 않는다. 특히 문화청은 오는 2008년부터 공공도서관 대출도서의 저작권자에게 국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공공대여권(Public Lending Rights)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4월 10일 밝혀 주목된다. 도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대신, 무료인 도서관 대출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자의 이익 침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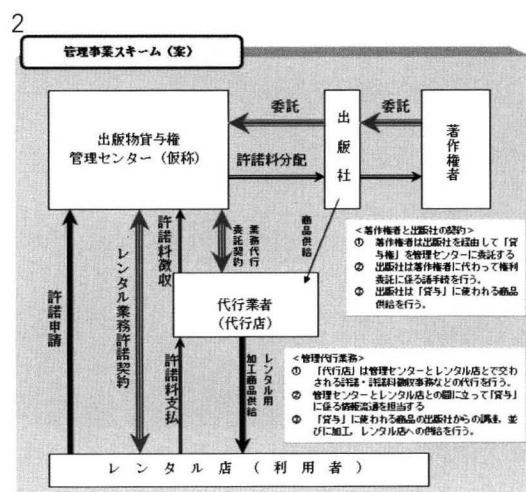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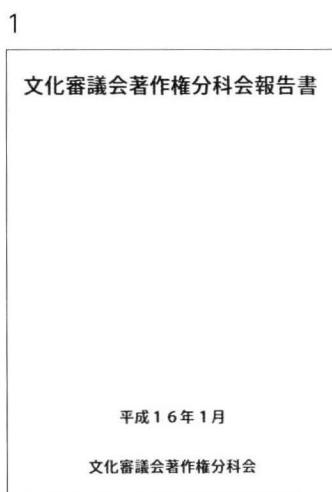
문화청은 6월부터 재개된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서 유럽 각국이 시행하는 공공대여권을 일본에 어떻게 도입할지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 3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저작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방안은 공공도서관의 대출 도서 가운데 기본적으로 일본인 저작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보상금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공저자나 번역자도 포함된다.

문화청은 연간 보상금 총액을 약 20억 엔(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재무성과 예산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보상금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할지 아니면 기금을 만들 것인지, 사립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자별 보상금 산출방법 등 고민거리가 적지 않다. 때문에 3년간의 준비기간을 둔 것이다. 공공대여권과 관련, 일본문예가협회는 2002년 6월에 ‘공공대여권의 확립과 국가 보상제도기금의 설립을 요구한다’는 요망서를 낸 바 있다.

법적 기반 정비가 우선 과제

출판물의 영리적 대여업체에 대한 대여권 적용, 정부 당국의 공공대여권 추진, 판면권 등 출판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추진 등 일본의 출판저작권보호 추세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권리 주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연구와 법제화에 힘쓰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출판저작권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문화관광부의 2003년 통계에 따르면, 만화시장은 판매보다는 대여(85.2퍼센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 베스트셀러 도서와 잡지의 상당수가 대여시장에 잠식당해 서점과 출판사, 저작권자의 피해가 자못 심각하다. 출판·서점 업계는 베스트셀러 판매에 따른 자본축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저작자 역시 창작의욕이 꺾이는 상황임에도 해결 대안을 찾지 못했다. 현재 추진중인 저작권법 개정작업에 도서대여권이 상정되어 있으나, 통과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하지만 출판시장의 위기구조나 대여로 인한 피해가 일본보다 몇 갑절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문화 강국을 위한 개정안 통과가 관철되기를 고대한다. 과행적인 도서정책과 함께 시장화, 산업 발전의 기반은 법적 토대 마련이 선결 과제이다. ■



1. 문화청 문화심의회가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
2. 가칭 ‘출판물 대여권 관리센터’ 운영 구조도.